

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14. 10. 21 조례 제256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, 관련된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생활위험수목”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해서 있는 나무로서 바람,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.
2. “생활위험수목 처리반”(이하 “처리반”이라 한다)이란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생활위험수목의 벌채,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.
3. “전문업체”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.
4. “지원”이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
2.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

3.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·전문업체·단체 등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의 별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 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사업)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생활위험수목 등 별체 대상목 실태조사

2. 생활위험수목 별체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,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

3. 생활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)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.

1.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별체실태 조사

2.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처리반의 설치·운영) ①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처리반을 설치·운영할 경우 생활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,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처리반의 임무)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

2.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

3.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0조(도지사에게 예산지원 요청) 시장은 처리반을 설치·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비, 인건비 등 비용을 「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